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직원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내국법인의 국채통합계좌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안 제56조제11항)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배제(안 제92조의2제2항)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다. 내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 개선(안 제111조제8항)

제3호 신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
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1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1항제3호 중 “비영리내국법인”을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에 제1호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1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탁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고, 예탁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을 예탁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 제1호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
는 비영리내국법인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

②

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1의15. (생략)

<신설>

2. ~ 4. (생략)

③ ~ ⑨ (생략)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

-----.

1. ~ 1의15. (현행과 같음)

1의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

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⑦ (생략)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2. (생략)

<신 설>

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탁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법인이고, 예탁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

	<u>채등을 예탁받은 경우: 해당</u> <u>내국법인</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3